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9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 박해철 · 손명수 · 추미애

송옥주·김윤덕·안태준

염태영 · 강선우 · 박홍배

전재수 한민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대상 에 포함하도록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점검과 중복 지도·점검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제25조제1항을"을 "제25조제9항제4호·제5호를"로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사목, 차목 및 카목의 배출시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아목까지의"를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허가나 변경허가를"을 "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1 조제1항, 제32조제1호
-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때에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 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 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전단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과 환경법 위반의 단속 및 예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중처벌이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	
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	
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	바
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	
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	
7조제1항, <u>제25</u> 조제1항을	제25조제9항
위반하는 행위	제4호·제5호를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u>.</u>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 설></u>	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나목, 사목, 차목 및 카목
	의 배출시설

4. ~ 8. (생 략)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	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
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	위
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약	염
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二
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	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	Ò
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	출
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역	إ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	액
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 제2호가목부터 <u>아목까지의</u>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가. ~라. (생략)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 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 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 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 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4. ~ 8. (현행과 같음)
세12조(과징금) ①
1
<u>아목까지 또는</u>
타목의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u>제44조제10항</u>나.・다.(생략)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 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 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 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 을 불법배출한 자
- 4. (생략)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u>허가나 변경허</u>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자

가
제44조제13항
나.·다. (현행과 같음)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
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
<u>1ই</u>
3 <u>제23조제1</u>
항 또는 제46조제2항
l. (현행과 같음)
5)
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가.·나. (생략)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

라. (생 략) <신 설>

② ~ ⑧ (생 략)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 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 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건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제25조제3항</u> <u>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u> 또는 제3항

라. (현행과 같음)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 또는 제2항

② ~ ⑧ (현행과 같음)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 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 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 절 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 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 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

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 등이 양수・상속 또 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 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 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 등에 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사 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 다. ----- 행정처분과 환경법 위 반의 단속 및 예방 -----